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 기관 확대〉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22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2.
3. 회 부 일 : 2024. 10.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 하고 있음.

또한, 위와 같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상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제도로, 202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위와 같은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임.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

건이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고발 등)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고발 등) -----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
<u>검찰총장에게</u> 고발	<u>검찰총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u> -----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
<u>검찰총장에게</u> 수사의뢰	----- <u>검찰총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u> -----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제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현행	개정안
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현행법 제19조는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¹⁾ 중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0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 직무 비리 및 부정부패 범죄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년 1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음.²⁾

1) 「**특별감찰관법**」 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가. 대통령
-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³⁾,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사. ~ 더. 생략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다. (이하 생략)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 고위공직자는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임

[특별감찰관실 감찰대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의 비교]

구분	특별감찰관실 감찰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적용 대상자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1. 대통령 및 가족(배우자,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3급 이상 공무원(비서관 이상 및 3급 행정관)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3. 그 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적용 행위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익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1. 「형법」상 직무유기(§122), 직권남용(§123), 수뢰 사전수뢰(§129), 제삼자뇌물제공(§130),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131), 알선수뢰(§132), 뇌물공여등(§133) 등 2. 직무관련 「형법」상 횡령, 배임(§355),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356), 배임수증재(§357) 등 3. 「특가법」상 알선수재죄(§3) 4. 그 외 「변호사법」상 청탁명목금품수수죄(§111) 등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⁴⁾ 및 「검찰청법」⁵⁾ 개정(2021.1

4)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5)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사법경찰관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사법경찰관도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지닌다는 점에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할 것임.

개정안의 경우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검찰총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만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외의 수사기관에도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21조는 제20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⁶⁾ 개정안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불기소처분처분 등에 대한 특별감

-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가.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 6) 「특별감찰관법」 제21조(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 ① 제20조에 따라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찰관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의견 진술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57